

2020. 8. 28.

문서번호 [내부]2020-90

수 신 본부지부분회장

참 조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제 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언론현업단체 공동 대응 지침 시행

1. 코로나19 감염병(이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공적 책무를 위해 애쓰는 언론노동자와 언론개혁완수 및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별역량 강화와 평등한 언론노동환경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지본부 및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8월 23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동자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개인 위생 관리 강화와 회사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점검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3.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8개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 대응 지침을 발표합니다.
4. 각 지본부장께서는 아래 대응 지침을 참고해 조합원의 감염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 대책 강화, 감염자에 대한 조치 등을 회사 측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난 24일부터 중앙사무처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응 지원반’ 이 작업 중인 ‘작은 사업장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도 함께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은 상황별 사례를 모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6. 이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은 언론노조 중앙 사무처에 신속히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언론현업단체 공동 대응 지침]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언론노동자의 감염 사례와 감염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방역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 감염 사례 증가로 감염 위험성, 특히 취재 및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시기에 언론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언론노동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보도와 방송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개개인의 안전 수칙 준수만이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보호하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책임감으로 아래의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일반 개인 위생 관리 강화 지침

1.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사업장(근무지 포함)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동 물품 사용·대인 접촉이 잦은 업무 종사자는 개인별 휴대용 세정제 사용을 의무화한다.
2. 재택 근무를 원칙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외근자는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퇴근하도록 한다.
3. 대면 보고, 회의 등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4.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신적 피로감, 스트레스 등을 줄이기 위해 야근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5. 카페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최소화하고, 손님이 붐비는 대중음식점 이용을 피하며, 업무 후 회식은 삼간다.
6. 회사는 종사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면 보고와 회의 최소화는 물론 비대면 회의 방안을 강구하고, 마스크·휴대용 개인 세정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용품을 충분히 제공한다.
7.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개인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선다.
8. 업무 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 장소를 방문했거나 감염자(밀접접촉자 포함)와 접촉한 경우(사후 포함) 즉시 부서장 등에 보고하고, 자택 격리 등의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 보도 및 방송 제작 관련 준수 지침

1. 취재와 방송 제작 중에는 취재원과 취재자·방송 제작자 자신, 우리 사회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대면, 현장 취재 및 방송 제작이 꼭 필요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실내에서 주로 이뤄지는 인터뷰의 경우 충분한 거리 두기 이외에 비대면과 실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3. 보도와 방송 제작을 위해 감염에 노출된 장소(실내)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방역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고, 감염자와의 인터뷰는 삼간다.
4. 취재와 방송 인력 중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KF94 등급 수준의 마스크 착용과 개인별 세정제 사용을 일상화하고 회사로 복귀하지 않는다. 이밖에 외근자의 경우에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 보고 후 퇴근하도록 한다.
5.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보도와 방송을 제작할 경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제정한 ‘감염병보도준칙’ 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감염병취재보도준칙’, 한국영상기자협회의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을 준수한다. [첨부 파일 참조]
6. 실내외 취재 활동 시 취재진 간에 밀착 접촉 및 과도한 취재 경쟁을 방지하며, 안전을 위한 공동의 취재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풀단 구성 및 취재에 적극 협력한다.
7.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보도와 방송 제작을 이유로 위험한 행위(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감염 장소를 출입하거나 감염자의 대면 접촉)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8. 코로나19 감염병의 보도와 방송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뿐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감염병 재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실 보도에 적극 힘쓴다.

※ 이밖의 내용은 2월 24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에 따른 대응 강화 지침’ (첨부1)을 참고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언론노조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에 따른 대응 강화 지침’ (2/24)
2.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 제정 ‘감염병보도준칙’ (4/28)
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정 ‘감염병취재보도준칙’ (8/28)
4. 한국영상기자협회 ‘2020개정판 영상보도가이드라인(감염병)’

2020년 8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첨부 1]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진흥재단 1802호 · Telephone 02-739-7285 · Facsimile: 02-735-9400 · <http://media.nodong.org>

2020. 2. 24.

문서번호 [내부]2020-28

수 신 본부지부분회장

참 조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심각’에 따른 언론노조 대응 지침 강화

1. 언론개혁완수와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별역량 강화와 평등한 언론노동환경실현을 위해 애쓰는 지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 대한 대응 지침을 강화합니다.
3. 각 지본부장께서는 아래 대응 지침을 참고해 조합원의 감염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 대책 강화, 감염자에 대한 조치 등을 회사 측과 신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언론노조 중앙 사무처(총무실 또는 사무처장)에 신속히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심각 격상에 따른 언론노조 대응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으로 2월 23일 정부는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긴급히 관련 대응 지침을 강화합니다. 각 지본부에서는 아래 대응 지침에 따라 회사와 대책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비상 상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특히 전 직원 및 방문객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등 긴급 상황에 따른 대응 지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등의 감염 예방 및 대응 조치

1.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자가 진단 결과 기침, 인후통이 있는 직원은 증상 발견 시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즉시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름
2. 대구 방문자 또는 신천지 집회 참석자 등을 접촉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 신고 매일 발열 상황 체크 및 재택 근무 또는 자가 격리(유급 휴가) (참조 : 첨부 문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월 24일 정례브리핑 자료’)
3. 취재 등 외근 직원 경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 보고 후 퇴근하도록 함
4. 야근 최소화 및 전 직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 제공
5. 불필요한 출장 또는 여행 자제, 부서회식 자제
6. 마스크 착용 필수, 특히 외근 직원에게는 반드시 회사에서 마스크를 제공토록 함(회사에서 직접 구매 또는 개인별 구입비 지급)
7.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이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직원의 경우, 아이돌봄휴가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참조 : 첨부 문서 1)
8. 자가 격리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 또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감염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단서 없이 병가 인정 가능하도록 함(참조 : 첨부 문서 1)
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및 격리 대상자, 사업장 폐쇄로 인한 직원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과 차별을 주지 않도록 함
10.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 등의 수립.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 사업장 감염 예방 및 대응 조치

1.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최소화, 출입 직원 및 내방객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계 통한 발열 측정(기준 37.5도 이상일 경우 출입 제한 직원의 경우, 귀가 조치 및 자가 격리 즉시 시행) 및 손소독 실시
2. 편집국과 방송 스튜디오, 주조실 등 시설에 대한 출입 최소화 및 소독 방역 강화
3. 회의실과 화장실 등 회사 내 공공 장소는 물론 카메라, 노트북, 복사기 등 공용 사무용품에 대해 분무형 소독제 등을 이용한 수시 소독 진행 및 점검
4. 밀폐된 좁은 실내 공간에서의 회의 또는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 자제
5. 감염병 발생 시
 - 사업장 폐쇄 범위
 - 사업장 폐쇄 기간(최소 1일 이상)
 - 소독 방역 방안
 -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수립하고, 전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

6. 사업장 폐쇄 경우, ‘비상 시 업무 지속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안내

- 방송사의 경우, 방송 시설 등에 대한 1일 소독 방역 계획 수립. 비상 시 최소 운용 인력에 대한 방진복 비치 확인 및 점검 등
- 신문사의 경우, 편집부 폐쇄를 대비한 예비 편집 장소 및 기기 확보 방안 수립. 운전의 경우, 대체 인쇄 시설 확보 등

<첨부 문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월 24일 정례브리핑 자료
2.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고용노동부 2020. 02. 17.)
3. [보도자료]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 2020. 02. 11.)

[첨부 2]

감염병보도준칙

■ 전 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

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일부개정]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첨부 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감염병 취재·보도준칙> (안)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안전 조치에 유의하면서 원활한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염병 취재·보도준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유의하면서 안전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행한다.
2.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가 발효될 때에는 정부의 해당 방침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취재 및 보도 활동에 임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가 시행될 때에는 취재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취재는 비대면 취재를 권장한다.
4. 언론사는 언론사 사무실에 대한 방역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취재기자에 대한 마스크, 고글, 장갑 등 필수 방호장비를 지급한다.
5.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비대면 취재를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외부 취재 시에는 다음의 준칙을 지킨다.
 - 1) 취재기자의 사전 발열 체크 및 사후 발열 체크 시행
 - 2) 취재기자에 대한 고글, 장갑, 마스크 착용 시행
 - 3) 장외 기자회견, 집회 등 취재 시 취재원으로부터 3m 이상 거리 두기 시행
 - 4) 실내 기자회견 취재 시 최소 2m 이상 또는 3m 이상 거리 두기 시행
 - 5) 기자회견, 집회 취재 시 등 언론사 사진·영상기자 간의 무리한 밀착 접근과 과도한 취재 경쟁을 자제한다.
6.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감염병동/보건소/검진소 등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기관에 대한 현장 취재는 삼간다.
7.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취재기자의 외부 취재 시 취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 퇴근을 권장한다.
8.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경우 주요 출입처 체류 취재기자의 경우, 출입처와 협의하여 비대면 취재를 권장한다.
9. 감염병 발생, 확산 시 취재현장에서의 취재기자 및 취재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언론단체(기관)의 협의에 따른 현장 풀기자단 구성과 풀취재 등에 적극 부응한다.
10. 확진자(감염인)에 대한 대면 취재는 삼간다.
11. 언론사 소속 임직원의 감염병 확진 시 해당 인원들에 대한 즉각적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이 경우 사내외 접촉자 및 사무실에 대한 방역 당국의 필요한 조치에 적극 부응한다.

12.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취재 및 보도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에 대한 명칭을 공식 사용한다.
13.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안전을 위하여 취재원, 시민,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미확인 정보 등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의 유포 및 확산을 경계하며, 사실(팩트)에 대한 엄정한 확인 취재를 통한 보도 원칙을 지킨다.
14.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감염병 관련 오보, 왜곡보도를 경계하며 해당 보도가 오보, 왜곡보도임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등 시정 조치를 취한다.
15.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현업 언론단체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적극 부응한다.

* 부칙 : 이 감염병 취재·보도준칙은 취재기자, 언론단체, 의료인,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개정, 시행할 수 있다.

2020년 8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첨부 4]

한국영상기자협회 ‘2020개정판 영상보도가이드라인(감염병)’

감염 의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취재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가?

- ☞ 전염성이 강한 법정 전염병 취재의 경우, 발생 현장을 취재하기 전에 반드시 방송사와 관계 기관에 안전성 유무와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준비가 갖춰진 후에 취재에 임해야 한다.
- ☞ 데스크는 코로나19와 같이 무증상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취재기자를 투입하기 전 사전에 안전유무 확인, 안전장비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불티와 월킨스는 데스크가 사고 당사자나 경찰, 소방대원이 겪는 것과 비슷한 현장 취재기자의 스트레스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 취재에 임하더라도 취재 전과 취재 중 수시로, 또 취재 후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관행이나 시간, 비용을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임하는 소속 종사자에 대한 진료 지시와 이행 점검의 의무를 부담한다.
- ▶ 일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은 재난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취재 언론인들에게 치명적인 감염병과 같은 재난을 취재 보도할 때 언론사, 데스크, 일반인 모두 언론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민감하지 못하다. 현장을 취재해야 하는 언론인의 각성과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국 언론의 데스크는 현장 취재 언론인의 무모하고 무지한 재난 취재보도를 언론인의 용기와 자세라고 그릇되게 믿는 경향이 있다.
- ▶ 데스크(회사)의 일방적 취재지시를 현장의 기자가 불복할 수 있는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전적으로 현장에 있는 기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언론사는 ‘재해재난 취재보도 매뉴얼’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 NHK 일본방송협회 <방송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특성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취재를 할 경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취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행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전화 등의 취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병원의 시설 관리자나 행정 당국의 안전상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감염병에 관해 영상보도 하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 전염 방지와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당 정보가 영상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의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 ☞ 영상이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 ☞ 환자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 무엇보다, 기자 본인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취재에 임한다.

▶ <관훈저널> 2020년 여름호에 게재된 “사진기자 대구에 가다” 기사에 대구의 코로나 현장을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일본 도쿄지사 A기자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로이터 글로벌 에디터인 안전책임자가 A기자와 취재 당일 나눈 대화에서 안전 책임자가 취재 기자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취재 현장은 위험하지 않았는가? 아침 저녁 체온은 체크했는가?
- 오늘 복장은 무엇을 입었는가? 취재가 끝나고 복장을 소독 했는가?
- (내일 감염병동 의료진 인터뷰가 예정돼 있고 병동 내부 취재를 허가받았다) 병동 내부 는 감염 위험이 높으니 취재하지 마라. 인터뷰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
- (서울로 복귀하면 자가격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레지던스를 2주간 예약하고 먹을 것까지 준비해두기로 했다. 가급적 외출하지 마라.

▶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초기에 감염병 취재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2020년 2월 21일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긴급 공지문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 코로나19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취재진이 코로나19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 병원과 검진소 취재시 필히 마스크와 고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최대한 원거리에서 취재해줄 것 등이다.

▶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020년 4월 28일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 발표했다.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임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권고 사항 중 특히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자협회는 2020년 2월 21일 <코로나19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

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